

2021. 02. 04.(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1년 2월 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I · SEOUL · U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홍남기	2133-5480
사회적경제정책팀장	김명선	2133-5482
담당자	김나영	2133-5477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5매

서울시, 코로나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원 융자지원

- '21년 사회투자기금 180억원 공급,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 집중 지원
- ①코로나19 피해기업(132억): 기업당 최대 6억원, 최대 6년, 0.5%~1.0%저리
- ②사회주택사업(18억): 최대 25억원(기업당 누적 채권잔액 기준), 최대 9년, 3%
- ③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30억): 1인 1천만원 3%저리, 한도 늘리고 조건은 완화
- 17일(수)까지 수행기관 모집, 사회적금융 실적 및 자체자금 확보 기관 중 선정

< '20년 기금 융자지원 사례 >

- ◆ (사례1)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주)OOOO는 문화예술 업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용역 발주건이 감소하는 등 매출이 30%이상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코로나19 특별융자를 통해 1억 3천만원을 1%의 저리로 지원받아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운영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다.
- ◆ (사례2) 사진작가 OOO 씨는 코로나19로 몇 달간 수입이 감소해 긴급 생계비가 필요한 시기에 고용취약노동자 융자를 통해 500만원을 신속히 지원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감염취약환경에서 일하는 돌봄·운송 등 필수노동자에게 총 18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 원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저리로 공급한다.

<'21년 사회투자기금 180억원 공급, 코로나19 피해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 집중 지원>

- 서울시가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 원(시기금 150억원 + 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4일(목)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 ‘사회투자기금’은 서울시가 2012년 국내 최초로 조성했으며 지난해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시가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 지난 8년간(’13년~’20년) 857개 기업에 1,460억 원을 지원했다.

-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①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②사회주택 사업 ③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①코로나19 피해기업(132억): 기업당 3~6억원, 최대 6년, 0.5%~1.0%저리>

- 먼저, <①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열악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구	분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금	리	0.5%	1.0%
이	차	2.5%	2.0%
보	전		
지	원	최대 6년간	
기	간		

- 기존에 융자를 받은 기업들도 금리가 더 낮은 대환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대환융자: 기존 융자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대해 저리의 대환융자를 통해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여준다.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코로나19 특별융자'와 동일하다.

-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 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으며, 실제 지원을 받은 기업 다수가 고용유지 및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여행, 문화예술 업종의 일부 기업은 폐업위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19 특별융자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②사회주택사업(18억) : 최대 25억원(기업당 누적채권잔액 기준), 최장 9년>

-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②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총 18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한다.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 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③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30억):1인 1천만원 3%저리, 한도 늘리고 조건은 완화>

- 마지막으로 <③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긴급 자금 소액융자도 총 30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융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 필수노동자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 '20년도 불안정노동자 융자 지원을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생활비와 치료비 등 긴급한 자금수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융자대상 조건과 한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 따라서, 올해 한도는 500만원('20년)→1,000만원('21년)으로 늘렸고,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자단체(공제회)에 소속되어야 했던 조건은 완화해 단체 미가입시에도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소속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17일(수)까지 수행기관 모집, 사회적금융 실적 및 자체자금 확보 기관 중 선정>

-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2월 4일(목)~17일(수)까지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 중 선정한다.
-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 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용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기관 공모(공고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1년 용자계획 및 수행기관(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부문) 모집 공모

1. 20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용자 기본계획

- 사업목표 : 사회적경제기업, 주거·환경 등 사회문제 해결 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용자규모 : 총 150억원
 - 수행기관 자체 조성금액의 5배 이내에서 사회투자기금 매칭 용자 지원
 - ※ 市 : 민간 매칭비율 = 5:1~1:1
- 사업기간 : 서울시·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의 역할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 자부담금 매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용자 및 상환관리 후 市로 사회투자기금 상환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1)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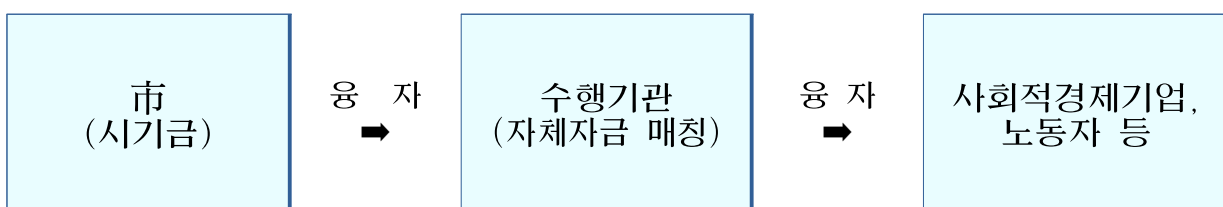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2)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 사회투자기금 용자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계획이 확정된 용자금으로 보유 현황 등 증빙(예. 통장잔액증명서)이 가능해야 함

2. 용자 추진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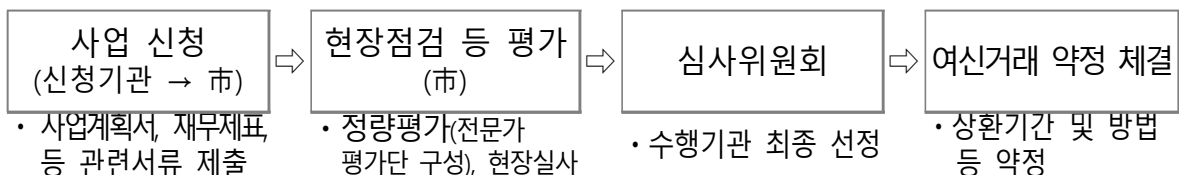


○ 수행기관 유의(준수)사항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용자 추진
- 자체 자금 확보 ※ 자체 조달금액의 5배 내에서 사회투자기금 용자 지원
- 사회투자기금 전용 통장을 마련하여 최초 1회 용자실행 시 기금 및 자체 매칭자금 통합 관리
- 사회적경제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용자 시 상환조건 및 기간 등은 수행기관의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용자는 여신거래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자 완료
 - ※ 1년 내 용자 미완료시 잔액과 시기금을 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반납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
- 수행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자회사, 대표자 가족회사 등)에 대하여 실행한 용자건은 시에서 즉각 회수조치 할 수 있음
- 2021년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협약을 통한 용자금 상환은 수행기관과 시가 정한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며, 지원기업(실제 용자기업)으로부터 조기상환으로 회수된 금액은 즉시 시에 알리고 상환하여야 한다.
- 자금관리 현황, 통장거래내역 등 격월 보고자료 제출 및 상환금·연체금·채권 관리현황 등 반기별 기금운영보고 자료 제출 등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기금 용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1단계 : 시 → 수행기관

- 수행기관 공모 신청시 용자 사업계획 등 제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된 수행기관과 시 여신거래 약정 체결 : 상환기간, 실행방법 등



2단계 : 수행기관 → 지원기관(실제 투·용자기업)

▶ 여신거래 조건에 따라 자체자금과 매칭하여 용자 실행

※ 수행기관의 용자는 공모 당시 市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상의 용도 및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3. 용자대상 및 조건

1)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

가. 일반용자시 이차보전 지원

- 대상사업 :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 사회주택 용자
- 용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 기업 ('20.1월~용자 신청시까지 피해입은 기업)

▶ 용자대상 선발시 동순위 내 우선 대상 선발기준

- ① 피해규모가 큰 기업 순
- ② 기존에 사회투자기금을 용자받은 적 없는 신규신청 기업
- ③ 정부·지자체의 타 정책자금(코로나 19 금융지원 관련)을 받지 않은 기업

- 용자신청 기한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

○ 용자조건

- 용자한도(기업당 누적 용자채권잔액 기준)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3억원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6억원

▶ 사회주택 용자 : 최대 25억원

- 용자금리 : 확진 및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 금리 적용기간 : 용자 여신기간('21.3월~'27.2월)

[사회투자기금 특별용자 금리 및 용자조건]

구 분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금 리	0.5%	1.0%
이 차 보 전	2.5%	2.0%
지 원 기 간	최대 6년간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용자조건을 적용하여 용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나. 기존 용자기업 대환대출

- 대상사업 :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사업
② 사회주택 용자
- 용자대상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 기업 ('20.1월~용자 신청시까지 피해입은 기업)
- 용자신청 기한 :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3월 이내
- 용자조건 : 기존 용자금 미상환금 전액 상환 조건
 - 용자한도(기업당 누적 용자채권잔액 기준)
 -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3억원
 -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6억원
 - ▶ 사회주택 용자 : 최대 25억원
 - 용자금리 : 확진 및 집합금지 등 피해기업 0.5%, 직접피해기업 1.0%

구 분	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기업	직접피해기업
금 리	0.5%	1.0%
이 차 보 전	2.5%	2.0%
지 원 기 간	최대 6년간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대환대출 조건을 적용하여 기존 채권잔액을 신규용자금으로 대환하고 추가 용자 실행
- 서 울 시 : 수행기관에 연 이자율 3.0% 기준 이차보전

※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지원은 '21년도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등 용자 및 사회주택 용자 일반용자 사업계획의 용자예산 범위 내에서 실행

2) 일반용자 사업계획

가. 사회적경제기업 등 용자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금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용자예산 : 110억원
- 용자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수행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 사회적투자사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회·환경·문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투자 프로젝트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용자(서울시) → 개별기업 채용자(수행기관)
 - ① 수행기관 용자(서울시)
 - 용자한도 : 수행기관 당 100억원 이내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용자기간 : 6년 (2년 거치 4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용자조건
 -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시기금 용자
 - ▶ 개별기업에 대한 투·용자는 공모 당시 시가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 실행하며,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의 용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 ▶ 개별기업에 대한 용자 이자율 연간 최대 3%이며,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용자실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 개별기업에 대한 투·용자 후 기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을 짐
 - ② 개별기업 채용자(수행기관)
 - 용자한도 (기업당 누적 용자채권잔액 기준)
 - ▶ 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3억원

- ▶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용자 : 최대 6억원
- ▶ 사회적투자사업 용자 : 최대 10억원
- 용자기간 : 최대 6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용자조건
- ▶ 서울 소재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및 운영비
- ▶ 서울시 내 주거·환경·문화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투자 사업비로 사용

나. 사회주택 용자

- 사업내용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 용자예산 : 15억원
- 용자대상 :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 서울시 내 사회주택을 공급 중 또는 공급예정인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용자(서울시) → 개별기업 채용자(수행기관)
 - ① 수행기관 용자(서울시)
 - 용자한도 : 15억원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수행기관당 100억원 이내)
 - 용자기간 : 최대 9년 (2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 코로나 19 피해기업 최대 6년)
 - 이 자 율 : 무이자
 - 용자조건
 -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시기금 용자
 -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용자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 ▶ 사회주택 용자 조성액(수행기관 매칭금 포함) 100% 를 시승인 사회주택 사업자(서울시 주택공급과 선정)에게 용자
 - ② 개별기업 채용자(수행기관)
 - 용자한도 : 기업 당 25억원 (누적 사회투자기금 용자 채권잔액 기준)
 - 용자기간 : 최대 9년
 - 이 자 율 : 최고 3% 이내 수행기관별 책정
 - 용자조건 : 공사비,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

다. 고용취약노동자 등 용자

- 사업내용 :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에게 긴급자금을 소액 융자하여 경제 안전망 확충

○ 용자예산 : 25억원

○ 용자대상

-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고용취약노동자 및 해당 노동자 단체
- 돌봄·방역 등 *필수노동자
 -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단체 종사자 또는 활동가

※ 노동자 공제회 양성을 위해 노동자 공제회 등 노동자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노동자(조합원) 및 노동자단체 우선지원

○ 추진체계

① 수행기관 용자(서울시 → 수행기관)

- 용자한도 : 25억원 (누적 채권잔액 기준 : 수행기관당 100억원 이내)

※ 본 사업 용자한도는 사회투자기금 용자사업(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용자, 사회주택 용자, 민간자산클러스터 용자) 수행기관 공모 용자한도와 별도 한도 적용

- 용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 용자조건

▶ 채권 이행을 위한 담보권 또는 대표자 보증 제공(필요시 공증)

▶ 수행기관 매칭금액의 5배 이내에서 市기금 용자

▶ 상환기간은 수행기관 자율에 의해 결정하되 기금의 용자실행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 완료하여야 함

② 고용취약노동자 채용자(수행기관 → 노동자)

- 용자한도 : 1인 당 최대 1,000만원
- 용자기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이 자 율 : 최고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 용자조건
 - ▶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노동자 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노동자(수입액의 80%이상 서울지역 내 발생)
 -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3) 수행기관 용자관련 사업비 지원

- 사업내용 : 용자사업 수행기관의 인건비, 사업 진행비,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각 용자 공모시 선정된 수행기관
- 지원기준 : 용자금액의 2%
- 선정방법 : 수행기관 용자사업 공모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선정
 - ① 수행기관 용자사업 공모신청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사업계획서」 제출
 - ② 지원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승인 (市 → 수행기관)
 - ③ 지원사업 실행 후 사업비 정산·실적 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市)
- 소요예산 : 총 3억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3개 예산항목으로 구분·작성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인 건 비 : 전담인력 인건비, 단순인건비
- 사업진행비 :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제세공과금, 기타 사업진행비
- 활 동 비 : 국내여비, 간담회비, 사무용품비 (활동비 편성한도 : 보조금의 7% 내)

【지출불가 항목】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직접 소요되는 전담 인력에 한하여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급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4. '21년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용자규모

- ① (우수)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사업 용자
- ② 사회주택 용자
- ③ 고용취약노동자 용자

○ 신청기간 : '21. 2. 4.(목) ~ '21. 2. 17.(수)

※ 마감일('21. 2. 17. 수요일) 18:00까지(限) 접수

○ 신청방법

- 기간 내 수시신청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는 '2021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용자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참고

※ 제출서류 최소화를 위해 사업별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다만, 유사·동일서류라 하더라도 기간이 다른 사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

○ 접수처 : 서울특별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2133-5477

5. 심사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1차 심사 : 전문평가단(금융·회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현장실사 및 정량평가 실시
- 2차 심사 :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실시
 - ▶ 수행기관 선정 및 용자지원금액 최종 결정

○ 심사기준

- 1차 심사(35점) : 재무건전성(18), 리스크관리능력(12), 안정성(2), 매칭자금비율(3)
- 2차 심사(65점)
 - 사업수행능력 : 조직운영(10), 인력구성(10), 이해관계자협력(5), 유사업력(5)
 - 사업수행계획 : 사회적가치 창출(5), 사업이해도 및 사업전략(5), 세부계획타당성(5), 채용자상품 운용(5), 채용자대상 선정(5), 채용자대상 관리 및 용자금 회수(5), 용자금 상환 리스크관리*(5)

*수행기관 용자금의 市 상환 시 담보, 구체적 상환계획 등 리스크 관리계획

○ 수행기관 선정 및 용자사업 추진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및 안내 : 홈페이지 공고 홍보
사업 신청 · 접수 ↓	• 수행기관의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제출서류의 수령·확인(서울시)
대상 기업 선정 ↓	• 1차 심사 :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 2차 심사 : 발표심사 및 정성평가
약 정 ↓	• 선정기업 발표, 약정 안내(용자금액, 구비서류 등) • 약정 체결 준비(약정서, 담보설정계약서 등)
용 자 ↓	• 약정 체결, 보증 설정, 기금 집행 동시 진행
대상사업 관리 ↓	• 이자 납부 안내·수령, 사후관리 및 연체관리
상 환 ↓	• 상환 관리
사 업 평 가	• 사업평가

6. 기타 유의사항

○ 상담 및 문의 : 서울특별시청 사회적경제담당관 ☎ 2133-5477

○ 기타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게 있음